

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554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바로니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2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C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85,000,000원,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한 가계일반자금 대출계약(마이너스통장,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매년 연장해 오다가 2020. 7. 24. C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종전보다 4,200,000원 감액한 80,800,000원, 대출이자율 변동금리(다만 종전보다 대출금리를 상향함), 대출기간을 2020. 11. 24.까지로 정한 한도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3. C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76,000,000원, 대출이자율 연 13%(다만 3개월마다 대출금리를 재산정함), 대출기간 120개월로 정한 가계일반자금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C은 2021. 5. 20.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 더 이상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8. 30. 대전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1. 9. 1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1차전115351).

마. 한편 C은 2008. 12. 10.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9. 4. 15. 그 모(母)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2020. 7. 24. 및 2020. 11. 23. C와 사이에 대출금 한도를 감축하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신용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후 C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며, 늦어도 C에 대한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한 2021. 12. 28.경에는 그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3.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23.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4. 15.로부터 5년 이내인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되었으나, 원고는 2014. 8. 19. C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환대출의 형태로 대출기한만을 연장해왔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이 2020. 11. 23.자 대환대출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21. 6.경부터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C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모(母)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매년 연장해오다가 2020. 7. 24. 및 2020. 11. 23. 2회에 걸쳐 각 대출한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이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이른바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앞서 본 ‘고도의 개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9. 4. 15. 체결된 반면, C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 5. 20.까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를 연체한 사실, ㉡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30. 비로소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9. 4. 22. 기준의 거래 후 잔액은 81,739,557원으로 대출한도금액인 8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도 상실되지 아니한 사실, ㉡ C의 위 최후 변제일인 2021. 5. 20. 기준의 거래 후 잔액은 72,833,335원으로 역시 그 한도액인 76,000,000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별지